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3.18.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영국의 악세사리 관련 유해 중금속 기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UK REACH 중금속 관련 기준

일반적인 악세사리(주얼리)의 경우, **UK REACH에서 규정하는 중금속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합니다. UK REACH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면서 EU REACH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입니다만, EU REACH 규정의 주요 원칙은 UK REACH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UK REACH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EU REACH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영국법에 UK REACH로 도입되었습니다. (Assimilated Regulation 1907/2006 on REACH 및 the REACH Enforcement Regulations 2008) **UK REACH와 EU REACH 규정은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UK REACH는 영국(GB)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출시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반면, EU REACH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북아일랜드에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화학물질을 유통하려면 관계 당국에 데이터를 제출, 시장 접근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동물실험제한,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제공, 예방 원칙 준수를 포함한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합니다.**

UK REACH는 GB에서 제조되거나 GB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 적용됩니다.

- a substance on its own(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
- a substance in a mixture, for example ink or paint (혼합물 : 잉크나 페인트)
- a substance that makes up an 'article' - an object that is produced with a special shape, surface or design, for example a car, furniture or clothes
(물품을 구성하는 물질 : 특별한 모양, 표면 또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물질, 예 : 차, 가구, 옷 등)

*** EU REACH 규정의 주요 원칙은 UK REACH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EU REACH에서의 금속 장신구 관련 유해중금속 기준 (ANNEX XVII)

<p>23. Cadmium CAS No 7440-43-9 EC No 231-152-8 and its compounds</p>	<p>10. Shall not be used or placed on the market if the concentration is equal to or greater than 0.01 % by weight of the metal in:</p> <p>(i) metal beads and other metal components for jewellery making;</p> <p>(ii) metal parts of jewellery and imitation jewellery articles and hair accessories, includ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celets, necklaces and rings, - piercing jewellery - wrist-watches and wrist-wear, - brooches and cufflinks.
<p>23. 카드뮴 및 화합물류</p>	<p>10. 금속 내에서 농도가 0.01% 중량 이상일 경우,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p> <p>(i) 금속 비드(bead) 와 장신구를 만들기 위한 금속 성분</p> <p>(ii) 장신구와 모조 장신구 완제품, 헤어 악세사리, 아래 금속의 부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찌, 목걸이, 반지 - 피어싱 장신구 - 손목 시계, 손목 의류 - 브로치, 단추
<p>27. Nickel CAS No 7440-02-0 EC No 231-111-4 and its compounds</p>	<p>1. Shall not be used:</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b) in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direct and prolonged contact with the skin such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rings, - necklaces, bracelets and chains, anklets, finger rings, - wrist-watch cases, watch straps and tighteners, - rivet buttons, tighteners, rivets, zippers and metal marks, when these are used in garments, <p>if the rate of nickel release from the parts of these articles coming into direct and prolonged contact with the skin is greater than 0,5 µg/cm²/week.</p>
<p>27. 니켈 및 그 화합물류</p>	<p>1. 사용되어서는 안 됨</p> <p>(b) 다음과 같이 피부와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하도록 의도된 완제품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고리 - 목걸이 팔찌 체인 발목 장식 반지 - 손목시계 케이스, 손목시계 밴드, 손목시계 타이트너 - 의복에 사용되는 경우, 리벳 단추, 타이트너, 리벳(대갈 못), 지퍼, 금속마크 <p>피부와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하는 이런 완제품의 부품으로부터 배출되는 니켈의 비율이 0.5µg/cm²/week를 초과하는 경우</p>

<p>63. Lead CAS No 7439-92-1 EC No 231-100-4 and its compounds</p>	<p>1. Shall not be placed on the market or used in any individual part of jewellery articles if the concentration of lead (expressed as metal) in such a part is equal to or greater than 0.05 % by weight.</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 'jewellery articles' shall include jewellery and imitation jewellery articles and hair accessories, including: (a) bracelets, necklaces and rings; (b) piercing jewellery; (c) wrist watches and wrist-wear; (d) brooches and cufflinks; (ii) 'any individual part' shall include the materials from which the jewellery is made, as well as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the jewellery articles.</p> <p>3.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individual parts when placed on the market or used for jewellery-making.</p>
<p>63. 납 및 그 화합물류</p>	<p>1. 납 농도(금속으로 표시)가 중량 기준으로 0.05% 이상인 경우 주얼리 제품의 개별 부품에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됩니다.</p> <p>2. 단락 1의 목적상: (i) '주얼리 제품'에는 주얼리 및 모조 주얼리 제품, 헤어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팔찌, 목걸이 및 반지; (b) 피어싱 주얼리; (c) 손목 시계 및 손목 착용; (d) 브로치 및 커프스 단추; (ii) '개별 부품'에는 주얼리가 만들어진 재료와 주얼리 제품의 개별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p> <p>3. 단락1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주얼리 제작에 사용되는 개별 부품에도 적용됩니다.</p>

※출처

- Eur-Lex : Regulation (EC) No 1907/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6R1907-20221217>

UK REACH의 Amendment에서 카드뮴, 니켈, 납(Cadmium, Nickel, Lead)에 관한 개정 사항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

- HSE : UK REACH explained

<https://www.hse.gov.uk/reach/about.htm>

▶ UK REACH 본등록 제출 마감일 3년 연장

영국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Defra)는 REACH의 등록기한을 톤수와 독성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 2028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로 3년 연장하는 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상기 서명에 따라 2023년 7월 19일 발효된 수정 법률문서는 링크(The REACH (Amendment) Regulations 2023 (legislation.gov.uk))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The REACH (Amendment) Regulations 2023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23/722/regulation/4/made>

서류 제출 마감일	연간 톤수	물질 위해도
2026년 10월 27일	1000톤 이상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 연간 1톤 이상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1 또는 만성1 - 연간 100톤 이상 후보목록물질(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8년 10월 27일	100톤 이상	후보목록물질(2026년 10월 27일 기준)
2030년 10월 27일	1톤 이상	-

※출처 : KTR

▶ 영국 UK REACH DUIN (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에 대한 이해

연장된 등록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영국(Great Britain) 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DUIN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1톤 이상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내 법인이 아닌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영국 내 유일대리인(OR)을 지정하여 신고서 및 신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UIN 수행을 위해서는 브렉시트 이전 2년 이내(2018년~2020년 1월)에 영국 내로 해당 물질을 유통하셨던 이력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 유통업자를 통해 영국으로 유통한 자료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증빙자료 준비 시 DUIN의 이행이 가능)

*DUIN을 제출한 후 물질의 톤수 및 위해도에 따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별도의 등록 없이 신고한 물질을 계속해서 영국 내 유통할 수 있습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문의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국 KOTRA 런던 무역관 : <https://www.kotra.or.kr/london/subList/40000000221>

TEL : 44-(0)20-7520-5300 / FAX: 44-(0)20-7240-2367 / kotra@kotra.co.uk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k/bc/selectOvrsk/bcDetail.do?deptCd=950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 자료 출처

- GOV.UK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ach>

- KTR : 영국 UK REACH 현황 안내

<https://reach.ktr.or.kr/www/selectBbsNttView.do?sessionid=517A1B67E7B9EDD1CB0E447B4556642&keys=304&hbseNos=46&nttNos=3056&searchClgyrs=&searchCnt=all&searchKwds=&integrDeptCdos=&pageIndex=1&p=3>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영국 > 비관세장벽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uMz8ukXBW8K.do>

- HSE : UK REACH explained

<https://www.hse.gov.uk/reach/about.htm>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